

2020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2020년도 제3회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I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처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1명	담당업무 참고

※ 근무처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이나,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기관 운영 등의 사정상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내 다른 부서로 근무처가 변경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 사무보조원 : 출입국관리행정 업무* 지원 등

* 출입국관리행정 업무(체류, 사증발급, 증명발급, 행정대행, 국적, 난민신청, 정보공개)지원, 민원 안내·접수, 신청서 자료 등 전산입력, 기록물 스캔 등

II 응시자격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준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 제외)

○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근무장소 소재지 : 경남 김해시 부원동)

2.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출입국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최소 경력 1년 이상)

▶ 항공사 등 국제선 수속 업무, 비자업무 등 (※ 단,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력은 제외)

○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사무분야 등)

-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 2급 이상
- ▶ 비서, 한글속기 : 3급 이상
- ▶ ITQ정보기술자격 : B등급 이상

○ 외국어 능력 우수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공통)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공통)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읍·면·동·주민 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3. 가산점 적용 [해당자에 한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 적용

III 근로조건

- 신 분: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 근무시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불가
 -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 한 후 계약 연장 결정
- 급여기준: 월 1,935,760원(기본급+급식비 포함, 세전), 명절휴가비 별도
 -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IV 채용일정 및 방법

1. 채용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 11. 9.(월) ~ 11. 13.(금)	'20. 11. 10.(화) ~ 11. 13.(금)	'20. 11. 19.(목)	'20. 11. 24.(화)	'20. 11. 27.(금)

※ 채용공고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후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서만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2. 채용방법

○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상 응시한 경우, 5배수 이하로 서류 합격자 선발

○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소양,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 정부기관 근무자로서의 국가관 및 정신자세, 보안의식 등

○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견, 채용당일 퇴직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V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0. 11. 10.(화) ~ 11. 13.(금)
-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해 인정)
 -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 우편 접수시,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 응시원서 접수증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교부(불합격자 별도 회신 없음)
 - ※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우편) 접수를 권장하나, 시한이 촉박한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3층 총무팀으로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가능
- 접 수 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3층 총무팀
 -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우편번호 : 48940, 전화: 051-461-3092~6)

VI 응시자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 1]
- 응시원서 및 지원서 각 1부 [별지 2 및 별지 3]
- 자기 소개서 1부 [별지 4] (※ 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은 기재하지 말 것)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 8]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9]
-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경력증명서 등) 1부 (해당자)
- 가산점 적용 관련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1부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추가 제출)

-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공증)을 함께 첨부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상기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VII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및 일부 내용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총무팀(☎ 051-461-3092)

제출 서류 총괄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구분	목록	제출	미제출
필수	1. 응시원서		
	2. 지원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9.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0.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선택 (가산요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선택 (우대요건)	출입국관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		
	어학 관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		

2020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2]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20년도 제3회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0년도 제3회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0 년 월 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3]

지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보호경비원()
성명	(한글)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학교명 기재 금지]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증명서에 한함)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기관)	역할	활동기간 (근무기간)	활동내용 (담당업무)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 _____(인)

[별지 4]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배우자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과정, 지원동기, 특기사항 등 기재(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 1장이 넘어갈 경우 별지에 작성하되, 총2페이지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

성명 : _____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직무수행 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역량: 조직 이해도,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업무역량: 행정업무 역량, 논리력, 의사소통능력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크기 제목 15p, 본문 14p, 줄간격 180%)

2020년 월 일

작성 자 : ○○○ (서명)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당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메일,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부산출입국 · 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산출입국 · 외국인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20. . .

성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원)
생년월일	. . .		

본인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0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유 무----□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유 무----□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유-무□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유-무□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유-무□

20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